

지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정 422.4- (전화번호)	시 권 규 정 3 조 / 학 과 시 장 선 발 사 항
차리기관	시 장	
시행일자	22. 9. 5	MM
보조번호		결사 226 호
보조기관	제2부 시장 전철	법무담당관(공고안심사)
기안취급처	도시계획국 전철 도시경박과 도시경박계	정지계장
기안책임자	소외일 75.9. (김심정)	조
경수유신 참조	과 안 참조	발 226 호 공고제 226 호
제 목	환지역정지 변경 지정 공고 (제1안 : 내부결재)	
<p>1. 당사에서 시행중 예 있는 망우추가 및 화양추가 환지역정지 지정지내 일부토지에 대하여 구획정리 사업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환지 확장 계획을 변경토지 동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제 188호 : 75. 8. 26)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예 공하였던 바, 동기간중 의견서 제출이 없으므로 공람 공고한 내용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및 동법제57조 규정에 의하여 별안과 같이 환지역정지를 변경 지정공고 로제 하오니 제철하여 주시기 바라며</p> <p>2. 본 공고문의 신문 게재는 생략하고 피보에 게재하는 등 시 관할구청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로제 합니다.</p>		
(제 2 안)		
공 고 안		공고안심사 1975. 9. 76 제 227 호 심 자 자 법 제 226 호 법 무 담당관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환지역정지 변경 지정공고.	발송

6201-1-8A (2)
620 11 10 수 이

190mm x 268mm 인쇄용지 12mm x 60mm
소 년 기 술 원 (92-6436)

2008

1.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중에 있는 만우추가및 화양추가 지구
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133호(75. 8. 26)로 금안 공고한바있는
일부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환지에정지를 별첨 도서
와 같이 지정하였기 동법 제47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

2. 환지에정지 변경 도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국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일게 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별도 송부할 것이나 명시령하는 토
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는 이공 고로 가름한다.

75. 9. .

서울특별시장

(제 3 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등 권

1. 당시에서 시행중에 있는 만우추가및 화양추가 지구내의
일부 토지인 귀하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환지에정지 변경 지정을 별첨공
고문 사본과 같이 변경 지정 공고 하여 가름합니다.

2. 환지에정지 사용에 대하여 ¹⁹⁷⁶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
고일로부터 사용수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 1. 공고문 사본 1매.
2. 환지에정지 지정서 1부.

수신처 : 별첨 소유자 명단.

(제 4 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등 권

만우추가및 화양추가 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별첨 공
고문 사본과 같이 변경 지정하였기 통보하니 관계로서 정리후 업무수
행에 착오 없기 바랍. 2009

첨부 :	1. 공고문 사본 1부. 2. 원지역정지 변경 지정도서 1부.
수신지 :	성동구, 도봉구, 동대문구청장(서민홀). (제 5 안)
수신 :	동대문구청장
참조 :	새무1과장
제목 :	본지구획정리 사업시험 신고 건설부로 부터 69. 11. 11(건고 115)차 인가를 득하여 당시 에서 시행중인 양우추가 토지구획정리 지구 내에 접한 토지에 대하여 사업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넓침과 같이 시행신고 하니 사업기간중 지적사무 취급에 착오 없도록 하기
첨부 :	1. 토지일부 1부. 2. 지적도 1부. (제 6 안)
수신 :	도시행정과장
제목 :	동 건 양우추가, 확장추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 사본및 도서와 같이 원지역정지를 일부 변경지정 공고 하얏가 통분하오니 관계도서 정리후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 니다.
첨부 :	1. 원지역정지 변경지정 도서 1부. 2. 공고문 사본 1부. (제 7 안)
수신 :	공보실장
제목 :	서보 게재 의뢰 양우추가, 확장추가토 지구획정리 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하 여 별첨 공고문과 같이 변경지정 공고 하얏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첨부 : 공·민·사·본 2 부 .

검열
1975. 9. 2

2011

지구명	토지의 신청자	토지소재지	요청내용	원인	처리방안	비고
5	양주국가 최광천, 추반은해	중리동 148-442 외2	관리지정 및 지구계에 정한 도로개설 요청	당초 가승조사시 지구 계에 인정된 도로개설 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지구외역시 확보되어 있지 않아 지구의 권역 가 없는 상태임.	지구계에 인정된 토지를 지구내로 편입 (토지소유권 동의서 첨부)과 동시에 지구외 진입로를 확보하고 잔여지는 신생 채비지로 변경하고 당해토지는 다음 한 위치에 병용하고 있는 채비지에 지정함으로써 면적을 해소코자 함.	
10	양주국가 조희몽	광동동 61596	지정 오류 정정 (구쳐광)	양주 가승 조사시에는 재대로 조사를 하였으나 관할구청에서 지구 오류 정정으로 인함	현재 발급되고 있는 토지대장이 외거 권역 변경하고 증명에 에하여는 추후 증전으로 처분코자 계획 변경 함.	
15	양주국가 76성관	중리동 25141	부족된 면적 증명 및 권역 변경 요청	관리 예정지 지정 공고시 면적 산출 착오로 31.302제이 부족함.	부족된 면적은 동토지와 대등한 위치에 병용하고 있는 채비지에 변경 지정하므로 면적을 해소코자 함.	
20	화성국가 이기암 배선용 이중우	귀동동 6143 -4 -5	소유 권역 변경 분필 지정 요청.	당초 가승 조사시 소유권 조사 착오로 결정 지정 하였음.	소유는 다르나 귀소 면적 및 가리 정입된 권역으로 인하여 분필이 불가능하여 과도된 면적에 대해 다음 추후 증전으로 처분코자 하고 상대수의 소는 단독 권리 변경 가능하여 별도로 매입한 위치 병용 채비지에 변경 지정 하므로 면적 을 해소코자 함.	
25						

서울특별시

환지예정지변경(분활)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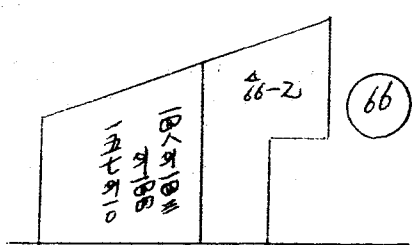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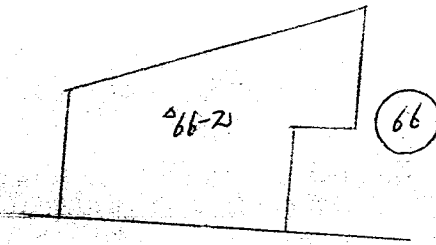
중 권 의 토 지			환 지 예 정 지								
동명	지번	지면적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구외번호	관리면적	환지면적	정수교부	구외번호	관리면적	환지면적	정수교부	
	채비지	16 -2	66		187 ²⁹			66		84 ¹⁰	
	신생채비지	45 -5						45		60 ²⁹	
	1	45 -6						45		22 ⁵³	
중화	148 -143 대	53									
	144 "	40		지구권				66	103 ²⁹	103 ²⁹	
	157 -10 "	32									
07 26 07 002											

환지에정지변경도면

변경전



축척 1:1200



작성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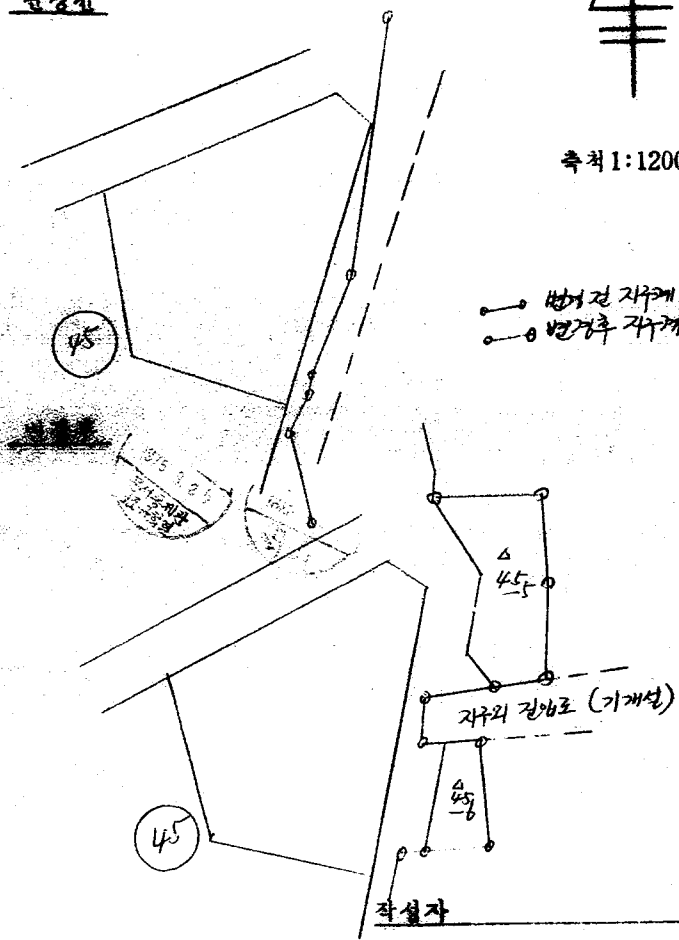
환지에 정지 변경도면

변경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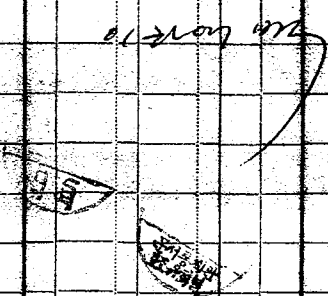
축척 1:1200

○ 변경 전 자구계 (안) (기대)
○ 변경 후 자구계



2010

환지에정지변경(분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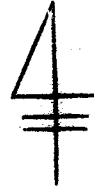
중건의토지			환지예정지변경										
동명	지번	지목	면적	변경전				변경후				비고	
				권리면적	환지면적	정수	교부	권리면적	환지면적	정수	교부		
				(변경전)									
공용	제157-6	林	180.55	121.20	121.20								
				(변경후)									
공용	제157-6	林	150					55.98	121.20	22.50			
				이전지목 변경 (도면상과)									
													

환지예정지변경 (분활)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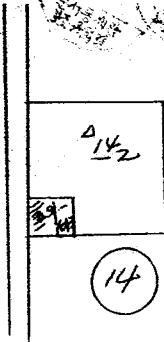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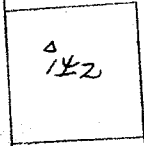
종건의토지				환지예정지										
동명	지번	지목	면적	변경전				변경후				비고		
				구획번호	권리면적	환지면적	정수	교부	구획번호	권리면적	환지면적		정수	교부
중화	251	답	771	13 251		407.29				13 251		407.29		
				13 251		119.79				13 251		88.24		
										14 251		28.1		
					521	521				521	521	523.29	2.29	
	채배지	142	14			340.40				14		312.40		
					01 321 017 4422									

환지에 정지 변경 도면

변경 전



축척 1:1200



작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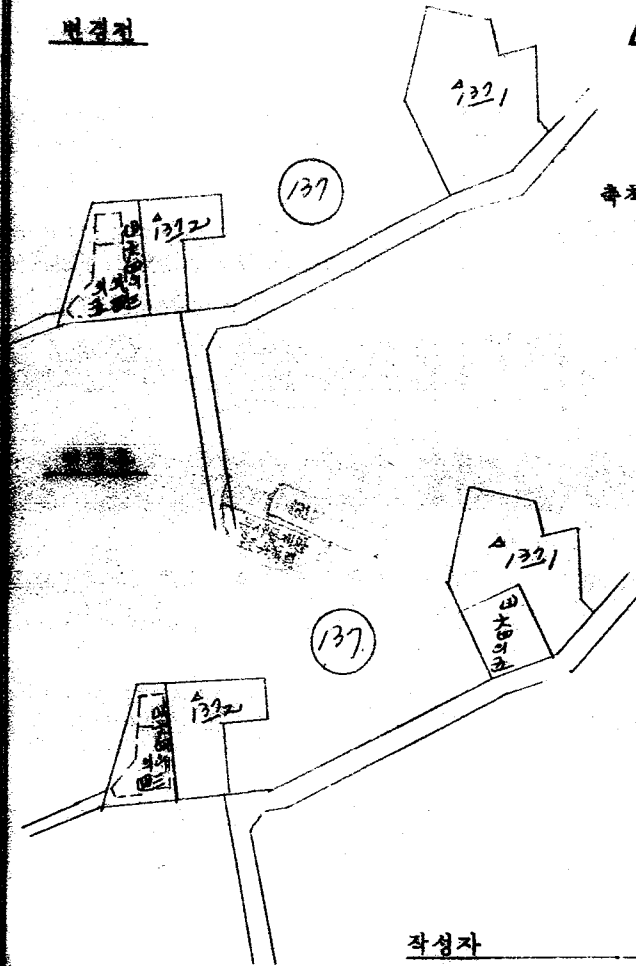
2019

환지에 정지변경도면

변경지



축척 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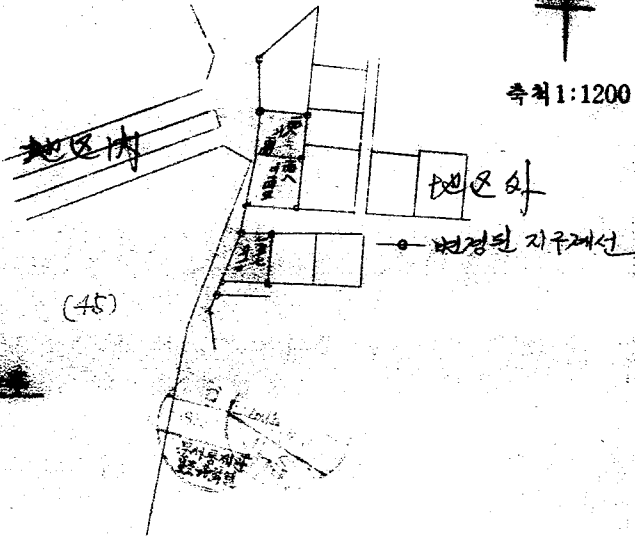
작성자

환저예정지변경도면

별첨지



축척 1:1200



작성자

2023

기 록 규 칙 서

호경 4324 -

75. 9. 20.

수신 수신자 상호

저음 양자역학적 측정 종료

1. 양자역학 측정종료 없는 경우를 측정 하였을 때 기록되지 않음으로
이때를 위하여 측정종료 없이 양자역학적 측정 종료를 위한
과 양자 측정 종료하였는지 통보함이다.

2. 양자역학적 측정이 기록되는 측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료할
때 측정종료할 수 있음을 양자역학적

일부 : 1. 종료한 경우 기록

2. 양자역학적 측정 기록 종료

기 록 규 칙 서

*신기 : 양자역학적 측정.